

#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libertyofthepress>

피해신고센터 : [csfhr2010@gmail.com](mailto:csfhr2010@gmail.com)

트위터 : [@pyohyeon](https://twitter.com/pyohyeon)

## -의견서-

---

수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신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임순혜 운영위원장 : 010-4248-5112    메일 : soonhrim@hanmail.net  
제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5-4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5년 10월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 신청 없이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검열을 강화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심의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심의규정 조항(친고죄)을 삭제하고 제3자 신청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으로,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 규정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 없이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수시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합니다.

4.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필수적으로 살펴야 하는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게시 정보의 사실여부와 공익 목적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데도 수사권도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소명의견과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5. 수사권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게 되면, 일부 보수 편향적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가 증가 할 것이며, 업무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6.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인 방심위가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검찰에 대신해 삭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행위입니다.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공인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라는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공인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닐 수 없습니다.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어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지수는 “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 국가”로 강등되었고, 방심위의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후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고,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5. 10.20

##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 <함께하는 사람들>

(1) 시민단체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라사랑시민모임, 더불어민주당을위한시민회의,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전역시민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반민특위,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서울의소리,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행동, 언론지킴이천주교시민모임, 애국촛불전국연대,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인권목회자동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촛불시민누리꾼연대, 촛불인권연대, 촛불항쟁계승시민사업단, 평화박물관,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바람소리](#) (twitter 그룹)

(2) 정치인: 김광진 의원, 김문수 서울시의원, 노웅래 의원, 문병호 의원, 배재정 의원, 송호창 의원, 심상정 의원, 이상호 의원, 유승희 의원, 유원일 전 의원, 이상규 전 의원, 이석현 의원, 이용길 전 노동당 대표, 이종걸 의원, 장세환 전 의원, 정동영 전 의원, 진성준 의원, 천정배 의원

(3) 자문변호사: 강병국 변호사, 길기관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김학웅 변호사, 박 훈 변호사, 서누리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한웅 변호사

(4) 자문위원: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대교수, 유종성 호주 국립대학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정재철 단국대 교수, 조국 서울대학 대학원 교수, 최정학 방통대 법학 교수

2015년 10월20일

##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